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77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면제	3

I. 개요

1.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4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12.
- (3) 회 부 일 : 2024. 1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면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직장가입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제 1호----- ----- ----- -----.
<신설>	1.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다)

2.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③ -----

-----다음
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단
서 삭제>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
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
하는 경우

<신 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
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
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이 만
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
어진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
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
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이 매월
1일에 만료된 경우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휴직자 <단서 신설>	5. -----. <u>다만, 제7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시행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면제)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5조¹⁾ 및 하위법령²⁾에서는 섬·벽지(僻地)·농어촌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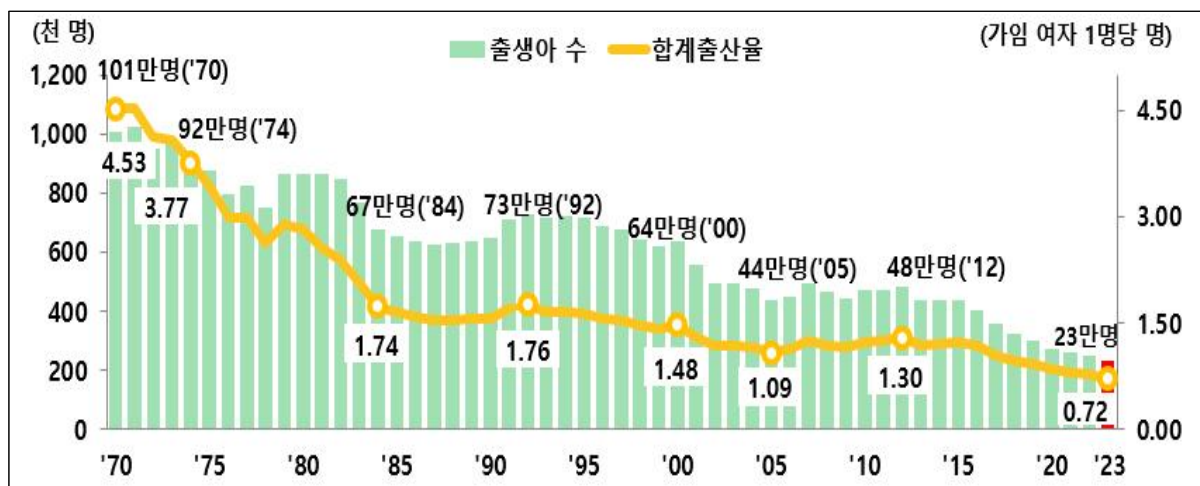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에 대하여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육아휴직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직장가입자)³⁾의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⁴⁾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⁵⁾에 따라 매월 최저보험료(2024.12월 기준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액 19,780원 중 가입자부담분은 50%인 9,890원임)⁶⁾를 납부하고 있음.

-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 3) 참고로, 「보험료 경감고시」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
 - 5)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 6) 9,890원 = 19,780원 x 근로자 부담률(50%)

□ 한편,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⁷⁾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⁸⁾은 0.72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를 추진 중에 있음.⁹⁾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통계청

□ 개정안은 직장가입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2024. 8. 28.

8)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0. 12.

- 첫째,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납부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면제는 국외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등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¹⁰⁾,

육아휴직자의 경우 이와 달리 휴직 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과·면제 원칙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직장가입자인 육아휴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음.

현재도 직장가입자인 육아휴직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액을 적용하여 2024년 기준 가입자부담분이 월 9,890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020. 4. 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건강보험 수입 감소액은 약 411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음.¹¹⁾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현행법상 국외체류, 군복무 등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는 현행법상 보험료 면제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른 휴직자 또는 육아 중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대한의사협회 의견

- 현재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받고 있는바 추가로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은 이

11) 육아휴직에 따른 보험료 경감인원(약 17만명, 2024년 11월 기준) x 19,780원 x 12개월 = 약 411억원

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진료를 받는 데 제약이 없는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보험료 면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및 경감률
-------------	-------------------------------

구분	사유	대상	경감률
직장	섬·벽지 생활 등	섬·벽지지역에 소재 하는 사업장 근무자	50%
	휴직	휴직자(육아휴직자 제외)	50%
		육아휴직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퇴직	임의계속가입자	50%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 중 1) 사업장의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 는 자 2) 사업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자	30%
	국외근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군인	모든 직업군인	20%
일자리	30인 또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30%~60%	
지역	섬·벽지 거주	섬·벽지 지역 주민	50%
	농어촌 거주	농어촌지역 주민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22%
	사회적 취약계층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한부모 가족 세대 3) 조손 가정 세대 4) 55세 이상 여자단독 세대 5) 소년·소녀가정 세대 6) 6개월 이상 장기수용자 7) 6개월 이상 행방불명자 8) 6개월 이상 질환·치료가 지속 중인 만성질환자	10%~30%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3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세대	10%~30%
		사업장 화재·부도 발생 세대	30%
		재산의 2/3 이상이 압류·경매된 세대	30%
		재난	대통령공고 등에 따른 자연·사회재난지역으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이재민으로 확정된 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보험료 경감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등